

수 신 수신처참조
참 조 수련 담당자
제 목 '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령
공포 안내

1. 관련 :

가.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(2026.2.20)

2. '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령이 공포(2026.2.20)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

- 제2조(수련시간) ①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(휴가·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)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.

- 제3조(휴직의 절차 및 기간)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.

1. 휴직신청서

2.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육아휴직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

2. 질병휴직: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

3. 임영휴직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가. 「병역법」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: 「군인사법」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「병역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

나. 「병역법」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기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: 「병역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

- (부칙)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<붙임>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문 1부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수련병원(기관)장

부장 방성민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김종윤

시행 :수련환경평가본부 제 2026-79 (2026.02.20)

우편번호 04165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 13~15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88 전송 02-705-9279 (대표FAX : 02-705-9279) E-mail : smbang@kha.or.kr